

승가의 일 세간에서 논의돼 안타깝다

한일불교유학연구회(공동대표 인환·현해·리영자·원두·흥선·강동균)가 출범 2년을 맞아 교단과 계율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11월 5일 동국대에서 열었다. 연구회는 또 해방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교단과 계율 관계 논문을 조사하고 대표적 논문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이날 세미나는 논문집에 게재된 비구니 팔경법과 부동주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당시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팔경법이라는 방편을 통해 성공적으로 비구니 승단을 설립할 수 있었다.”

팔경법연구회 소장 마성 스님
“팔경법은 명백한 여성차별이자 여성출가를 억압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조승미 서경대 종교연구소 연구원

팔경법의 여성 차별 문제가 제기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비구·비구니 간의 견해 차이는 여전히 있다.

제1발제에 나선 팔경법연구회 소장 마성 스님은 ‘팔경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이해’를 발표했다. 스님은 팔경법은 붓다가 직접 제정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 출가를 허용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에서 고안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붓다에 의해 비구니 승가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면 팔경법도 붓다가 직접 제정했을 것이다. 비구니 팔경법이 제정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인도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붓다가 여성 출가를 망설인 이유를 바라문들의 반대와 승단 내부의 보수적 비구니들의 반대에서 찾았다. 특히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던 당시 인도에서도 여성 출가를 허락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승단 내부에서도 바라문 출신의 보수적 비구들은 여인의 승가 합류를 원치 않았다.

마성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팔경법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받음으로써 승단 내외의 저항을 무마시켰다. 붓다는 결코 여성차별주의자가 아니었다. 팔경법은 당시 비구니승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수적 비구들에 의해 팔경법 내용 일부가 수정됐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런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논리라면 부처님 후대에 제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대승경전이나 대승계경 모두 폐지 대상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금 당장 팔경법을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팔경법은 비구니계의 비밀제법에 명시돼 있으며 이부승(二部僧) 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승가에서 이부승 제도가 유지되는 한 팔경법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팔경법 극복 방안으로 현대적 재해석과 비구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그러나 스님은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비구니 승가의 복구에 반대하는 상좌부 장로들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성 스님은 “한국 불교 승단으로만 한정한다면 수정안보다는 제정안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흥기한 이후 당시 부파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온 성문제(聲聞戒)를 버리고 새로운 보살계(菩薩戒)를 제정했다. 한국불교 승단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은 승가의 일이 세간에서 논의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육사의 입장에서 원론을 강조했다.



마성 스님, 도일 스님, 조승미 연구원(왼쪽부터)이 팔경법의 현대적 이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일 스님은 “팔경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비구니를 안 하겠다는 것이다. 팔경계 논란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점이 달라진다. 승단은 남성·여성이 아닌 비구·비구니라는 수행 집단이다”고 말했다. 팔경계는 세간의 가치와 다른 출세간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스님은 또 팔경계의 주요 조목인 비구에 대한 공경도 여성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비구 승단과 비구니 승단의 좌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인 사미가 여성인 식차마나에게 예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다.

도일 스님은 “비구 비구니들이 자신이 수행을 위한 출가 집단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남녀 평등 문제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성품을 잘 닦은 수행자라면 남녀의 상을 떠나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구니 스님들과 여성 불교학자들은 팔경법이 명

백한 여성 차별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승미 서경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은 “현대사회에서 젠더를 근거로 위계를 정하고 그에 대한 비판 자체가 금지되는 조항을 명문화 하고 있는 것은 종교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팔경법이 비구니 승가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비구에 대한 비방이 종단에 대한 발언과 동일시 되면서 비구니의 발언권 약화로 이어지고, 비구니 승가 내부 견열이 강화되면서 의견도출 통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2주제 세미나에서는 ‘율장에 나타난 부동주’를 주제로 이자랑 동국대 HK 연구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자랑 교수는 부동주(不同住)가 부파 분열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해인사 前 율원장 해능 스님과 중앙승가대 강사 경성 스님은 화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승가의 정신 속에서 부동주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기자 smle2@daum.net

팔만대장경 눈으로 볼 마지막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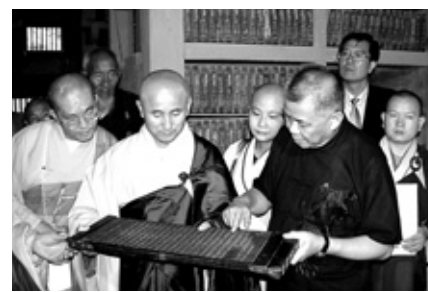
11월 15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초조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대장경 관련 국보·보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11월 15일~12월 18일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천년의 기록, 내일을 엮다’를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 발족 50주년과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판각 천년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에서는 국보 제243호 ‘초조본 현양성교본 권11’, 국보 제266호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5’ 국보 제32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 등 국보 19점, 보물 13점 등 총 51점의 대장경 관련 유물이 공개된다.

초조대장경은 1011년(고려 현종2)에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하여 판각한 국내 최초의 목판대장경으로 중국 북송 때 만들어진 개보적판(開寶勅版) 대장경(971~977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한역 대장경이다. 아울러 세계



2002년 해인사 장경각을 방문한 중국불교대표단이 대장경을 살펴보고 있다.

기록유산인 해인사 소장 초조대장경의 근간이 되며 역사적·민족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이다.

특히, 해인사 대장경판은 이번 전시를 끝으로 더 이상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으로, 일반인들이 팔만대장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탱(幀)’·‘탱화(幀畵)’→‘도(圖)’로

국보·보물 등 348건 명칭 변경

불교회화를 지칭해 온 ‘탱(幀)’, ‘탱화(幀畵)’ 명칭이 ‘도(圖)’로 변경되는 등 국보·보물 348건의 명칭이 변경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보물 348건(국보 72건, 보물 276건)의 지정 명칭을 변경한다고 11월 9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지정 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워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 명칭 변경은 공예, 회화, 도자 등 분야별 관계전문가의 의견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진행됐다”며 “유물의 특성을 정확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교 회화는 불화를 통칭하는 ‘탱(幀)’, ‘탱화(幀畵)’ 사용대신 ‘도(圖)’로 통일해 표기했다. 불화의 한 장르인 벽화는 명칭에 벽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벽화’로 표기했다. 또, 일반 회화는 기존의 작품명 앞에 “호(號)”를 표기하던 것을 작가명 표기로 변경했고,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筆)”자를 표기했다. 도자기의 명칭은 종류(기년명)·시문(기법)·문양(기형)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쉬운 이해를 위하여 기존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풀어 표기하되 지니친 한글 전용은 지양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경주 불국사 대웅전(慶州 佛國寺 大雄殿)’, ‘경주 불국사 구식 석축(慶州 佛國寺 架橋式 石築)’과 ‘논산 노강서원 강당(論山 魯岡書院 講堂)’ 등을 11월 11일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조동섭 기자

비구니 부총무원장 두면 해결될 일

토론서 팔경법 극복 방안 제시

팔경법과 부동주에 관한 세미나 후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종합 토론을 펼쳤다. 종합토론에서는 팔경계의 여성 차별을 지적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반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일불교유학연구회 공동대표 원두 스님은 비구니 부총무원장 제도 도입 등 장기적 해법을 통해 불평등 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두 스님은 “비구니 부총무원장 제도

를 통해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계율도 많기 때문에 종헌은 바꿀 수 없어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성 스님도 팔경법 극복 방안을 제시하면서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제1경법에서부터 제3경법까지의 조항을 이 부승가의 합의에 의해 별도의 규정을 만

들고 제4경법에서 제8경법의 항목은 이 부승 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구니 승가가 비구 승가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를 이원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마성 스님은 이 경우 별도의 기구를 신설해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혜영 대진대 초빙교수는 “공동체의 일원을 어떻게 가름하고 화합과 변영의

차원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붓다의 관점을 통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붓다의 원칙에 어긋나면 문헌학적인 자료라도 재검토하고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승가대 오인 스님은 이자랑 교수에게 비구니 팔경법과 부동주를 연계한 질문을 던졌다. 오인 스님은 “부동주에 따라 뜻이 같은 비구니 스님들이 교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자랑 교수는 “부동주는 파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율장에서 파승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비구뿐이다”고 답했다.

박기범 기자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제5회 법계고시 시행 공고

(사)한국불교 조계종 법계고시를 종법에 의거 (제5회 법계고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덕 대선 및 대덕, 종덕 및 종사, 대종사 품수를 응할 대덕큰스님은 소정의 절차를 기간 내에이행 하시어 법계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명	연령	법납	학력경과	경과년수
제5회 사)한국불교 조계종 법계 고시	25세 이상	5세 이상	고졸 사교	1. 선법 법계를 받은 후 5년경과 입적 후 5년 경과한 자 2. 종법, 대법 법계를 받은 후 5년경과 후 입적 후 10년 이상 경과 3. 승정, 종사 품수로서 5년경과 후 60세 이상 경과한 자 4. 대종사는 역임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일시	30세 이상	10세 이상	고졸 사교	
장소	35세 이상	15세 이상	대졸 이상	
종사급 이상 품계를 받는 분에게는 인증패 불자등을 수여함	40세 이상	20년 이상	대졸 이상	
	60세 이상	35세 이상	대졸 이상	
	60세 이상	40세 이상	대졸 이상	

- ◆ 신청 및 구비서류 : (1) 법계고시 신청원서 (총무원에서 발급한 양식) (2) 증명사진 1매
- ◆ 신청마감(서류전형) : 2011년 11월 30일까지
- ◆ 문의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054)-572-1034

불기 2555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5회 법계고시 시행 공고
종정대행 총무원장 대봉